

의 결



국민권익위원회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3 - 992호

의 안 명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대상기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교육청(17개 시·도)

의 결 일 2023. 12. 18.

주 문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교육감(17개 시·도)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3년 12월 18일

위 원 장 김 홍 일

위 원 정 승 윤

위 원 김 태 규

위 원 박 종 민

위 원 권 석 원

위 원 강 길 연

위 원 최 정 목

위 원 송 현 주

위 원 홍 세 욱

위 원 홍 봉 주

위 원 김 태 영

위 원 최 진 영

위 원 신 대 희



[별지]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강화 방안

2023. 12.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추진배경	1
II. 현황	2
III. 문제점	6
1. 학교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소홀	6
2. 학교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인프라 부족	8
3.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부실 운영	10
4. 마약 예방 교육 사후관리 미흡	14
IV. 개선방안	16
1.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시간 명시	16
2.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인프라 강화	17
3.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	18
4.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
V. 조치사항	22
[붙임1] 관련 법령	24



I. 추진 배경

❖ 추진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7조

□ 최근 학원가 마약 음료수 사건*과 같은 청소년의 마약 노출 위험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 마약 예방 대책이 시급

* 학원가에서 청소년들에게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음료수 시음 권유, 부모들에게 자녀의 마약 복용을 경찰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을 막으려면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으로 연간 53만여 명 참여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개요>

① 기간: 2023. 7. 10. ~ 19.(10일)

② 참여인원: 일반국민 1,341명, 국민패널 2,333명, 총 3,674명

③ 청소년 마약노출 위험 예방 방법에 관한 설문결과:

예방교육 강화(50%) > 처벌 강화(41.1%) > 치료·재활 강화(6.97%) > 기타(1.93%)

○ 이렇게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 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에도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

※ 학교에서는 음주·흡연 등에 비해 소홀히 되고 있고, 학교 밖의 경우 관련 기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이에, 학교 안과 밖에서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이 강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추진 경과>

○ 실태조사 : 2023. 5~9월

○ 개선방안 마련 및 기관협의 : ~ 11월

○ 위원회 상정 : 12월

II. 현황

□ 마약의 개념

- (마약의 정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오용·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물로 '마약류'가 정확한 표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로 세분
- ※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대마초 등 기존 마약들 외에 **신종 마약(합성대마, 러시, 아바, 크라툼 등)**이 계속 등장, 펜타닐 등 의약품으로 처방되는 마약의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약에 대한 정의>

- ① 약물 사용 욕구가 **강제에 이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 ② 사용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 ③ 사용 중지 시 온몸에 견디기 어려운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 청소년 마약 노출 상황

- 우리나라 전체 마약 범죄자 수는 등락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로, '22년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

<최근 6년 간 연도별 마약 사범수(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사범수(명)	14,123	12,613	16,044	18,050	16,153	18,395

- 주된 연령대가 낮아지는 가운데, 특히 10대 범죄자의 경우 '17년에 119명에 불과했지만 '22년에는 481명으로 4배로 급증

<최근 6년 간 연령별 마약 범죄자 수(대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

(단위: 명)

연령 연도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합계
2017	119	2,112	3,676	3,919	2,589	1,491	217	14,123
2018	143	2,118	2,996	3,305	2,352	1,457	242	12,613
2019	239	3,521	4,126	3,487	2,554	1,598	519	16,044
2020	313	4,493	4,516	3,599	2,423	2,232	474	18,050
2021	450	5,077	4,096	2,670	1,992	1,550	318	16,153
2022	481	5,804	4,703	2,815	1,976	2,166	450	18,395

○ 최근 마약 유통 환경도 청소년층의 마약 확산 위험을 증가

- 온라인(텔레그램 등 SNS, 다크넷) 거래 활성화, 낮아지는 마약 가격,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구매 경로 다양화
- 특히 펜타닐*의 경우 의사 처방으로 인해 불법성 인식 가능성이 낮고, 패치 등 다양한 형태로 손쉽게 투약, 낮은 가격으로 거래
- * 모르핀의 약 100배 효능을 가진 진통제로 말기암이나 대형 수술 환자 등에 사용, '21년 미국 약물과다사망자(약 10만 명)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

※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통증을 호소해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유통**하고, 공원과 상가 화장실 심지어 **교내에서 투약**한 10대 42명 입건 ('21.5.20. MBC·JTBC 등 방송·언론 보도)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23.7.10.~19.)

- 전체 응답자 3,674명 중 **88.5%**인 3,250명이 현재 **청소년 마약 노출 위험이 심각**하다고 인식
 - ※ 매우 심각하다 1,786명(48.6%) > 심각하다 1,464명(39.9%) > 모르겠다 317명(8.6%) > 심각하지 않다 94명(2.6%) > 전혀 심각하지 않다 13명(0.3%)
 - 연령별로 25세 이상에서 88.7%(3,447명 중 3,056명), 19세 이상 25세 이하는 83.9%(192명 중 161명), 18세 이하 94.3%(35명 중 33명)

□ 학교 마약 예방 교육 현황

- 「학교보건법」과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학교 보건교육과 안전교육 중 약물 오남용 예방에 포함

<학교 마약 예방 교육 관련 법령>

- 보건교육: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학교보건법 제9조)
 - * 약물에는 음주, 흡연, 마약류, 기타 약물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학교안전교육의 경우도 동일
- 학교 안전교육 7대 분야: ① 생활안전(안전사고 등), ② 교통안전, ③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④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⑤ 재난안전(화재 등), ⑥ 직업안전, ⑦ 응급처치(학교안전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학교안전고시)에서 교육별 실시 횟수와 시간 규정(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의 경우 학기당 2회, 연간 10차시 이상)

-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보고한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에 따르면 거의 모든 학교가 학생들에게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시

* 매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약물 오남용, 체중 관리, 구강 관리 교육 실시 현황 조사

- '22년의 경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2,007곳 중 초등학교 1곳을 제외한 모든 학교가 마약류 등 기타 약물 오남용 교육 실시

※ 약물의 종류를 음주, 흡연, 마약류 등 기타 약물로 구분하여 조사

- (교육 주체)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은 보건교사, 담임교사, 관련교과 교사(예 국어, 사회, 체육) 등 주로 교원에 의해 진행

※ '22년 실태진단 결과, 표본수 상위 2개 교육청(경기 629, 울산 247)에서 보건교사가 진행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담임교사 또는 관련교과 교사가 그 다음

- (교육 자료) 교육부는 교원들이 마약 예방 교육에 참고·활용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제작, 관련 홈페이지(학생건강정보센터)에 공개

※ 초중고용 3종, 교수-학습지도안(학습활동 개요), 스크립트(마약 관련 심화 정보), PPT 등

□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현황

- '22년 기준으로 약 16만 8천명으로 추정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에서 실시

*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은 ① 초·중학교에서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자퇴하거나, 고등학교에 미진학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단체 중에서 지정, '22년 기준 총 220개소(시도 16, 시군구 204)

※ 시군구센터가 상담, 검정고시반 운영 등 교육, 직업체험·직업교육 훈련, 자립지원 등 지원사업 직접 수행, 시도센터는 기본적으로 시·군·구센터에 대한 관리·지원

-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고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23. 8. 기준으로 234개 기관이 등록

* 교육과정이 법정화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교육내용과 교육방법 선택

※ 등록 시 효과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부모의 취학의무가 유예되고, 기관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안교육기관 명시 조건으로 '학교' 명칭 사용 가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의 마약 예방 교육은 여성가족부 지침인 '청소년사업안내'에 구체화된 기초소양교육*에 포함

* 법질서 의식,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제원리 이해, 절주·금연 교육, 마약류 예방 교육, 안전교육(심폐소생술 포함),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도박 예방교육 등

-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보건법」이나 「학교안전법」이 적용되는 학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 예방교육 실시는 자율적으로 결정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교육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스스로 정한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학칙으로 결정

Ⅲ. 문제점

1 학교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소홀

□ 학교 마약 예방 교육 경험 저조

- 여성가족부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음주·흡연 예방 교육에 비해 환각성 물질 및 약물 위험 교육을 경험한 비율이 낮았음

< '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중고생 약 11,320명 설문조사, '22. 11.)>

교육 경험	예방 교육 구분			
	음주	흡연	환각성 물질 및 약물	고카페인(에너지) 음료
있음	61.0%	86.9%	43.2%	35.9%
없음	39.0%	13.1%	56.8%	64.1%

※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2년마다 청소년의 유해환경 접촉 실태를 조사

- '22년 교육청 조사상 거의 모든 학교가 약물 오남용 교육을 실시하였고, 음주·흡연과는 구분하여 보고되고 있지만, 별도 실시 여부는 불분명

※ 음주·흡연 예방 교육과 함께 실시하였더라도 마약류 등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실적에 포함 가능

- 각 학교의 실시 여부만 조사되고 교육참여 인원 등은 점검하지 않아 전교생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부 확인 불가능

■ '22년 학교 마약류 예방교육 실태진단 결과*(이하 '22년 실태진단)

- 교육부 요청으로 교육청에서 '22. 11~12월 약 1,00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 실태를 표본 조사
- 관내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 평균 교육시간은 약 2시간, 마약류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는 학교는 거의 없음(○○교육청)

□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시간 불명확

○ 학교보건법 등 법령에 마약 예방 교육 시간을 명시한 규정이 부존재

-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육에서 다루어질 주제*들만 열거하고 있으며, 교육 시간 등 교육방법에 관한 규정 미비

*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 예방, 정신건강 증진

- 학교안전교육의 경우도 관련 법령에서 음주·흡연·마약 등 약물 종류별 세부 교육시간을 정하고 있지 않음

※ 7대 안전분야 중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의 전체 교육시간은 연간 10차시(학기당 2회 이상)이상으로, 약물 중독 예방 교육은 초등학교 5차시, 중학교 6차시, 고등학교 7차시(「학교안전고시」 별표 1)

○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에도 마약 예방 교육에 대한 교육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교육부가 매년 학교보건과 관련하여 전국 17개 교육청에 안내하는 업무 지침('23년에는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 명명)

○ '22년 실태진단 결과 일선 교육청에서 마약 예방 교육 시간 확보의 어려움 호소, 교육시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22년 실태진단 결과 교육청 의견

- (○○교육청, △△교육청) 7대 안전교육 내 마약류에 대해 별도 구분되어 있지 않아 교육과정 편성 시 누락되거나 마약류만의 교육시간 확보 어려움

□ 교원의 마약 예방 교육 역량 부족

- 학교 예방교육이 주로 교원들에 의해 진행됨에도 그들에게 교육 역량 강화과정에 대한 이수 의무가 없어 실효성 있는 교육에 한계

- 교육부는 중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 원격연수 과정*을 개설('23.5.)하였고, 교육청도 대부분 자체 역량강화 프로그램(대부분 일회성 집합교육) 실시

* 교육부 마약류 예방교육 및 지도역량 강화 과정(15차시)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 최신 법제도, 정책 변화 반영
- (교육대상) 교원, 교육전문직, 일반직 공무원, 강사, 보육교사, 학교직원

※ '22년 실태진단 결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 교육부와 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약 예방 교육역량 강화과정을 개설·실시

- 그러나,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교원 전체에 위 과정에 대한 이수 의무가 없고, 이수하지 않은 교원도 마약 예방 교육 진행 가능한 상황

□ '23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 일부(교육부 원격연수 과정)

○ 교직원 역량강화 온라인 연수과정 개설·운영

-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온라인 연수과정에 담당교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 조치

※ 교육청 역량강화 연수과정 역시 일반적으로 의무 과정이 아니고, 일부 참석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보건교사 또는 학교 당 1명만 필수(권익위 실태조사, '23. 8.)

□ 마약 예방 교육 실적 저조

○ 학교와 비교하여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의 마약 예방 교육 실적이 현저히 부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한 곳이 거의 없었고, 다른 기초소양교육과 비교하더라도 저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초소양교육 실적(권익위 실태조사, '23. 6.)>

연도	합계		마약 예방 교육*		금연교육		절주교육		기타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9	587	5,860	1	6	100	670	10	99	476	5,085
2020	641	5,165	1	4	65	216	6	22	569	4,923
2021	1,128	9,980	3	25	62	556	14	223	1,049	9,176
2022	1,645	13,248	7	48	45	224	3	46	1,590	12,930

* 마약을 비롯한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포함한 숫자

-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중 일부(11.9%, 23개 기관)만 마약 예방 교육 실시, 교육 참여 인원도 부족(7.7%, 763명)

<'23년 등록 대안교육기관 마약 예방 교육 실시 현황(권익위 실태조사, '23. 6.)>

등록 기관*	교육 계획 및 실시 기관 수		전체 학생 인원 및 교육 인원	
	교육과정 포함	교육 실시 (예정 포함)	학생 현원	교육 인원 (예정 포함)
193개	21개	23개	9,912명	763명

* 학교로부터 대안교육 위탁받은 기관의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니므로 제외

□ 교육 실시 강제 수단 부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업무매뉴얼*'상 필수교육이 아니어서 각 센터에서 마약 예방 교육 실시 여부가 재량

* 여성가족부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운영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작·배포

※ (필수교육) 근로권익교육, 아동학대예방·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성교육, 자살예방 교육

- '23년도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한 센터는 39개로 전체 220개 중 17.7%에 불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실적 제고에 한계

※ 연간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자체 지도·점검 시 누락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의견(권익위 실태조사, '23. 7.)

- 담당 실무자 1인이 참여인원 모집과 홍보, 관리까지 거의 모든 것을 진행하는 상황이므로 필수교육이 아닌 프로그램은 추진하기 어려움(○○시 센터)
- 업무매뉴얼에서 의무로 지정한 기초소양교육을 우선 진행하다 보니 의무가 아닌 교육을 진행하지 못함(△△시 센터)

□ 교육 실적 제고를 위한 유인 부족

- (학교 밖 지원센터) 마약 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게 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단이 미약

- 현재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마약 예방교육을 충실히 실시 하더라도 사업성과 또는 평가에서 얻는 이익이 미약

* 다른 사업과 똑같이 1건의 지원서비스 실적으로만 평가되어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에 비해 실익이 없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가의 지표 반영 여부도 미확정

- (대안교육기관) 교육청이 재정지원('23년 약 44억원)*을 함에 있어, 마약 예방 교육 실적을 고려하지 않음

*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지자체 포함)으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비 지원

■ 대안교육기관 마약 예방교육 관련 교육청 의견(권익위 실태조사, '23. 6.)

- 대안교육기관을 마약류 예방 교육 필수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관 반발과 미인가 시설의 등록 저조 우려, 마약 예방 교육 실시를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과 같이 자발적으로 교육을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필요(○○교육청)

- 대부분의 교육청이 마약 예방 교육 실시가 지급조건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 실적에 따라 지원규모도 달라지지 않은 상황

※ 일부 교육청에서는 7대 학교안전 분야 또는 약물·사이버 중독 분야 전체의 교육 실적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마약 예방교육 실적이 필수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음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시 학교안전교육 실적 고려(권익위 실태조사, '23. 9.)>

○ 서울시교육청

- 지원기관 선정 시 7대 안전교육 상황 평가(총 100점 중 5점, 70점 이상일 경우 지원)
- 지원금액은 학생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안전교육 시행으로 달라지지 않음

○ 경기도교육청

- 학교폭력예방, 교통안전, 재난대비, 약물 오·남용 등 필수 2회 이상 편성 조건
- 지원금액 결정 시 마약 예방 교육 실적 고려 불분명

○ 전라북도교육청

-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각 영역별로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 조건
- 기관별 지원금액 결정 시 고려되지는 않음

○ 경상남도교육청, 제주도교육청

- 학생 7대 안전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중 1개 교육 필수 편성 조건
- 기관별 지원금액 결정 시 영향 없음

□ 마약 예방 교육 환경 미조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마약 예방 교육 전문기관(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법무부 등) 활용을 위한 조건 미비

- 소속 교원이 직접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교와 달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충실한 마약 예방 교육을 위해서 외부 강사 초빙 필요

※ 기초소양교육 담당자는 교원과 달리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직접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강의가 불가능하여 동영상 시청하게 하는데 그침

- 학교 또는 청소년시설과 달리 교육인원이 보장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전문기관 교육신청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마약예방교육 전문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또는 법무부 강사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음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2년 출장교육(5,644회)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단 2회, 올해 시작된 법무부 마약 예방 출장교육이 5월 기준으로 1건도 없음

- 여성가족부 업무매뉴얼에 지원기관과 신청방법만 안내, 교육신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관련 부처와의 협업관계 부재

○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 교육자료들은 학생을 전제로 제작된 것이 많아,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가 제한적

- 교복을 착용하거나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등 학생만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부각하여 제작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자료로서 부적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업무망을 통해 공유되는 교육자료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와 비교할 때 수적으로나 다양성 면에서 부족

※ 학생건강정보센터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관련 자료가 총 492종인데 반해, 법무부 법교육 자료 중심으로 약 20종에 불과

4

☐

- 교육부 학생건강분야 일반지침 점검서식에는 교육 실시 학교수와 미실시 학교에 대한 조치사항만 명시

※ 교육 횟수, 인원, 시간, 강사, 내용 등 기본적인 사항 불포함, 다른 약물 예방교육과 별도 실시 여부 확인 불가능

<'23년 학생 건강증진교육 실시현황 점검서식>

학생 건강증진 교육 실시현황

기관명 : 교육청

1. 마약류·흡연·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단위 : 교)

구분	천제 학교수				교육실시 학교수			
	초	중	고	특수	초	중	고	특수
마약류								
음연예방								
음주예방								
기타 약물								
오·남용 예방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예방교육 미 실시 학교에 대한 교육청 조치실적

○ (조치일자 및 조치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 교육청도 각 학교에 위 점검 서식에 따라 실적 보고하도록 안내

<○○교육청 학교 보고서식>

흡연·음주 등 약물오남용 예방교육[illegible]

※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 등에서 실시한 교육을 모두 포함(단순 자료배포는 제외)

- 「학교보건법」상 모든 학교에 마약 예방 교육 실시 의무가 있으나, 대안학교(전국 50개)와 같은 각종학교는 조사 누락, 모니터링 사각 발생
-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는 초·중·고등학교와 구분되어 있지만 교육부의 점검서식에는 각종학교가 빠져 있음
- ※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관내에 대안학교가 존재하는 14개 교육청 중 6곳에서 각종학교에 대해 조사 누락(2개의 교육청은 조사는 하였지만 교육부 보고 시 제외)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감독 규정 미비

-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교육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상 스스로 정한 교육과정 운영계획 또는 학칙 위반이 아니면 감독 불가능

<법률상 대안교육기관 감독사항>

등록취소 사유	시정명령 사유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2.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 3. 변경등록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4.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 확인, 5. 설립·운영자의 결격,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시설·설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해당 대안교육기관의 학칙을 위반한 경우

- 또한 교육청이 대안교육기관에 권고를 비롯하여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할 법령상 근거가 부존재하므로 국가적 시책 추진에 제약
- ※ 다수의 교육청이 법령상 대안교육기관에 행정지도할 권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권익위 실태조사 '23. 6.)

IV. 개선방안

1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시간 명시

□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 실시

- 마약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교육 실시
 -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에 마약 예방 교육을 음주·흡연 등 다른 약물과는 별도로 실시하도록 명시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23.7.10.~19.)

- 전체 응답자 3,674명 중 91.4%인 3,359명이 초·중·고등학교에서 음주·흡연과 혼재된 교육이 아닌 별도의 마약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찬성
- ※ 특히 주된 교육의 대상인 18세 이하에서 94.3%가 필요하다고 응답

⇒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을 개정하여 마약 예방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도록 명시

□ 마약 예방 교육시간 명시

-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에 마약 예방 교육시간을 명시하여 최소한의 교육 시간 확보
- ※ '22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에 학년별 15차시 이상 체계적인 성교육과정 편성·운영하도록 명시

■ ○○교육청 학생 마약 예방교육 개선방향 의견(권익위 실태조사, '23. 6.)

- 정확한 수업시수와 교육과정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는데, 학교안전법과 학교보건법에 각각 제정된 법령과 지침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침으로 안내할 필요

⇒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에 마약 예방 교육시간 명시

2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인프라 강화

□ 담당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의무화

- 마약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교원은 교육부 또는 교육청의 교육 역량 강화과정 중 하나를 이수 의무화

※ '22년 실태진단 시 ○○교육청에서는 담당교사 1인이 전체 학생을 교육하기 불가능하므로 전 교직원 대상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교육을 진행하는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과정 이수 실적을 점검

※ 학교별로 전체 교원 수, 마약 예방 교육 담당(진행) 교원 수, 마약 예방 교육 담당 교원의 교육역량 강화과정 이수율 등을 조사

- ⇒ [교육부] 교원 연수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교원이 교육역량 강화과정을 필수 이수하도록 하고, 이수 실적 점검

* 2024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방향 등

□ 표준 교육자료 개편

-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을 교원들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개편

- 마약 예방 교육 내용 중 빠져 있는 부분* 보충, 전문지식이 부족한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쉽게 서술

* 다양한 마약류의 종류와 특징, 마약 중독 시 치료와 재활 등

- ⇒ [교육부] 일반 교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편

□ 마약 예방교육을 필수교육으로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마약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추가

※ (필수교육 예시) 근로권익교육, 아동학대예방·인권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성교육, 자살예방교육, 마약류 예방교육

■ 국민생각함 설문조사('23.7.10.~19.)

- 전체 응답자 3,674명 중 95.3%인 3,502명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마약 예방 교육을 필수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

⇒ [여성가족부] 업무매뉴얼을 개정하여 마약류 예방교육을 필수교육에 명시

□ 마약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인센티브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경우 재정지원이나 평가 시 마약 예방 교육 운영실적을 평가지표 등에 반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가(「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의 2)>

- 평가주기: 3년(최초 평가는 '24년에 실시)
- 평가항목: 사업인프라, 운영성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기반 조성, 지자체 지원기반 노력도, 우수 운영사례 등
- 평가결과 활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대한 감독 및 지원 등에 반영

⇒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가 시 마약 예방교육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

□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 교육 실적 고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교육 실적 반영
 -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금을 신설하거나, 지원금액 결정시 마약 예방 교육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대안교육기관 마약 예방교육 관련 교육청 의견(권익위 실태조사, '23. 6.)

- 기관 등록 및 지원 기준에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일반 학교와 같이 마약 예방 등 의무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한 기관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계획 수립 시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를 신설하거나 마약 예방교육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환경 조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마약 예방 교육 전문기관에 용이하게 교육 신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또는 법무부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전문강사에 의한 마약 예방 교육 확대

■ 경기도 청소년 마약·약물 중독 선제적 예방교육 사업('23. 5.)

- 경기도 청소년육성기금을 재원으로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하여 진행
- 도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청소년복지 지원기관, 소년원 및 보호관찰기관 대상
 - ※ 도내 32개 센터 중 15개 센터가 참여 총 교육인원 323명('22년에는 경기 도내 센터 약물 오남용 교육 2건, 교육인원 14명, 지원기관은 지역 병원 건강증진센터)

⇒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전문강사에 의한 마약예방교육 기회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학교 밖 청소년 전용 마약 예방 교육 자료 개발

⇒ [여성가족부]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 제작·배포

□ 교육 현황 모니터링 강화

- 점검 항목을 확대하여 일선 학교의 마약 예방 교육 현황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

<점검사항 예시>

전체 학생수, 참여 학생수, 단독 교육(다른 약물 포함 여부, 함께 교육한 약물의 종류), 수업의 성격(보건교과, 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내용(마약의 종류특징, 처벌 규정, 위험성, 치료·재활 등 세부교육 내용), 강사* 등

* 담임교사, 관련교과교사, 보건교사, 의약전문기(약사, 한의사), 경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 법무부 법교육 강사, 그 밖의 약물 오남용 전문강사, 기타 등 구체적으로 범주화

- ※ '22년 실태진단 시 교육부가 제시한 진단항목은 ① 예방교육 시간, ② 예방교육 횟수, ③ 교육진행자(담임교사, 보건교사, 관련교과교사, 외부강사 등), ④ 주요 교육내용, ⑤ 교육 시 활용자료, ⑥ 전체 학생 중 실시비율 등

■ ○○교육청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실시 현황 점검 사항(권익위 실태조사, '23. 8.)

- 학년별로 실시 현황을 보고하도록 함
- (점검사항) ① 교육참여 학생수, ② 교육실시 횟수, ③ 교육내용(단독, 포함), ④ 교육형태(대면, 비대면), ⑤ 강사(내부: 담임교사, 교과교사, 보건교사, 외부: 약사, 한의사, 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 약물오남용 강사, 기타), ⑥ 미실시 사유(미실시 사유, 향후계획)

- 점검대상 학교의 종류에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를 추가하여 모니터링 사각 해소

⇒ [교육부]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 개정하여 점검사항을 확대하고, 점검대상 학교에 각종학교를 추가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도입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마련

<법률 개정안 예시>

제○○조(지도·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안교육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학습권 보호 및 안전 강화 등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안교육기관 운영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 설비,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교육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마련

V. 조치사항

□ 대상기관 : 교육부, 여성가족부, 17개 교육청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①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시간 명시	▪ 마약 예방 교육을 다른 약물 오·남용 교육과 별도로 실시 ※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 개정	교육부	'24. 6.
	▪ 마약 예방 교육시간 명시 ※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 개정	교육부	'24. 6.
② 학교 마약 예방 교육 인프라 강화	▪ 마약 예방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의무화 - 교육 진행 교원은 교육역량 강화 과정 필수 이수 - 이수 실적 점검 ※ 교원 연수 관련 지침 개정	교육부	'24. 6.
	▪ 교육부 표준 교육자료 개편 - 마약 예방교육 내용 중 빠져있는 부분을 보충, 일반 교원이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쉽게 기술 ※ 교육부 교사용 지도서 개편	교육부	'24. 12.
③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개선	▪ 마약류 예방교육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필수교육으로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업무 매뉴얼 개정	여성가족부	'24. 6.
	▪ 마약 예방교육 실시·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가시 마약 예방교육 실적을 반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평가 지표에 반영	여성가족부	'24. 6.

구 분	조치사항	해당기관	조치기한
	▪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시 마약 예방교육 실적 고려 - 마약 예방교육 프로그램 지원비를 신설하거나 마약 예방교육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계획에 반영	17개 교육청	'24. 12.
	▪ 학교 밖 청소년 마약 예방 교육 환경 조성 -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전문 강사에 의한 마약예방교육 확대 - 관련 기관 협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교육자료 제작·배포 ※ 관련 부처와 협약 체결, 교육 자료 제작·배포	여성가족부	'24. 12.
[4] 예방 교육 실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교육 현황 모니터링 강화 - 점검서식의 점검사항 확대하고, 학교 종류에 각종학교 추가 ※ 학생건강증진 분야 일반지침 개정	교육부	'24. 6.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도입 -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근거 마련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교육부	'24. 1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7. 4. 18>

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숨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거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흡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2021. 12. 28.>
[전문개정 2007. 12. 14.]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0., 2016. 2. 3., 2021. 3. 23.>

1. 「아동복지법」 제31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 관리교육 및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의 체험중심 교육활동으로 운영되는 경우 이에 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
6.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교육시간·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30., 2014. 1. 3., 2015. 7. 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학생 안전교육) ①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통합 실시할 수 있다.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단위활동, 차시)

구분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		재난안전교육	직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약물 중독 예방	사이버 중독 예방			
교육시간	유치원	13	10	8	5	5	6	2	2
	초등학교	12	11	8	5	5	6	2	2
	중학교	10	10	10	6	4	6	3	2
	고등학교	10	10	10	7	3	6	3	2
횟수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3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2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학기당 1회 이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청소년복지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한다),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의2(지원센터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센터의 감독,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대안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등록 등) ①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대안교육에 필요한 교사(체육장을 포함한다)와 교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설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교육목표
5. 학칙
6.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8. 교직원 배치계획서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1. 외국 대학 입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2. 주된 언어가 외국어이거나 외국어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등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한 시설
4. 그 밖에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등

③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6.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취소)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계획서와 다르게 운영하거나 교육한 경우
3. 제5조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한 경우
4. 학생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대안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정 본 입 니 다 .

2023. 12. 26.

국 민 권 의 위 원 회

